

2023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5월 31일(수) 13:3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2명)

■참석의원 : 권인철, 정용식, 이강훈, 유경선, 강성률, 천성오, 김태현,
송영균, 김민수, 반중혁 (10명)

■불참의원 : 정동훈, 양근제 (2명)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 1) [심의]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2)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3)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 4)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 6) 직제 규정 개정(안)
- 7)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8) 직인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정동훈 의장이 외국 출장 일정으로 본 회의 불참에 따라, 권인철 부의장(이하 '부의장')이 참석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시작하다.
- 부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총원 12명 중 10명 참석
- 성진호 간사(이하 '간사')가 제2차 기획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또한 회의진행방식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안건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및 자문 안건 : 관계자 설명 청취 후 질의응답, 토의 진행, 심의 안건은 표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안건 : 관계자 설명 청취 후 질의응답, 토의 진행, 표결 - 자문 안건 : (관계자 설명 생략) 질의응답, 토의 진행
회의 자료 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형태 - 본문 및 첨부 문서 합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본문과 첨부 문서 분리하여 편철

- 부의장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 유경선 의원이 안건 진행 방식의 사전 논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고, 자문안건은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안 취지에는 동의함을 개진하다.
- 천성오 의원이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와 자문안건을 어떻게 분류하여 논의해왔는지는 대학평의원회 회차마다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학칙만을 심의안건으로 볼 것인지 등은 계속 논의한 사항이므로 대학평의원회 내에서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강성률 의원이 자문안건에 관한 회의 진행 방식은 현재 제안된 방향에서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천성오 의원이 대표적인 자문안건인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 및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이며, 법인전입금 규모, 법인의 책무성 등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부서의 설명이 없이 회의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인근의 국민대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법정부담금 부담을 위해 약 50억을 전입하였으나, 지난 회의에서 보고된 2022학년도 결산 내역의 법인전입금 규모는 부서장의 설명이 없이 서류로만 제시된다면 이해될 수 없다고 부연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부의장이 회의표결 방식에 대한 논의 제안에 대하여 김태현 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태현 의원이 현재 표결방식인 무기명투표는 어떤 의견이 어떤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지 회의록에서 기재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부의장이 거수나 투표(투표용지 등)에 관한 논의가 아닌 회의록에 찬성과 반대 의결한 의원 성명을 기재하자는 제안인지 질의하다.
- 김태현 의원이 맞다고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어떤 안건을 기명투표할 것인지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또한 정보의 공개 차원에서 표결방식의 개선 취지는 동의하나

선출직 평의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기명투표로 찬성과 반대를 기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하다.

- 유경선 의원이 자문안건과 심의안건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명시된 심의와 자문의 범위에 따라 구분함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심의와 자문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따라 규정에 명시된 심의 사항 중에 학칙, 자문 사항 중에 대학헌장을 기획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의장이 대학평의원회 본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원회 본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교수지원팀 안건은 순서를 바꿔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함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김양래 대학원 교학부장(이하 '교학부장')과 김장엽 교수(방위사업학과)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가) 계약학과(정원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신설(제4차 대학원위원회 의결사항)
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신설 학과명	신설 과정	계약학과 선정 기관	계약기간
국방AI로봇융합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방위사업청	2023.09.01. ~ 2026.08.31
방산AI로봇융합학과	석사과정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09.01. ~ 2026.08.31

- 주요 내용
가)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및 제44조(학위종별) 개정
나) [별표 1]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다)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태현 의원이 사업운영기간인 2026학년도까지만 학과를 운영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하다.
- 김장엽 교수가 사업이 종료되면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탈락 시에는 일반 협동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임을 답하다.
- 교학부장이 일반 협동과정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받아 운영함을 부연하다.

- 정용식 의원이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대학원 협동과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출석의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부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안)

- 김율희 교수(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가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하다.
- 제안이유
 - 가) 기존의 사업 명칭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재단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 주요 내용
 - 가) 규정명 개정
 - 나) 제1조(목적), 제3조(사업), 제6조(재원),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효력) : 사업단 직제명 및 사업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유경선 의원이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유를 질의하다.
- 김율희 교수가 연구재단에서 일괄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이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지침이 안내되었음을 부연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3) 직제 규정 개정(안)

- 성진호 팀장(이하 '평가감사팀장')이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하다.
- 제안이유
 - 가) 일관되게 기구표 표기 수정 및 현행화
 - 나)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의 사업명 변경으로 직제명 개정
 - 다)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단(2023.4.18.) 보직 사항 추가
 - 라) 2024학년도 신설 및 명칭 변경하는 단과대학의 시행일을 보직 인사발령일 고려하여 "2024년 3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변경
- 주요 내용
 - 가) 제3조(기구)
 - 제3조 제3호 '인공지능융합대학' 및 '참빛인재대학' 종전 부칙의 개정(시행일)으로 본칙에 표기
 - [별표 1] 기구표에 운영팀 및 교학팀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통일

되도록 '교학팀'과 '운영팀'을 일괄 삭제

-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 나) 제9조(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조직에 '센터장' 보직이 미반영되어 개정
다)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 사업명 변경되어 사업단 직제 반영하여 개정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기구표에 교학팀과 운영팀이 직제 규정에 있는데 이를 기구표에서 철폐하는 사유를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철폐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운영팀과 교학팀이 있는데 기구표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본문 안에 팀을 정의한 경우에는 기구표에 명시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일률적으로 팀을 제외시키는 것이 제안된 사항이며, 행정본부에도 대학 혁신사업단 등에 운영팀이 존재하나 기구표에는 빠져있음을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제3조 개정사항을 설명을 요청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본칙의 개정사항은 없지만 부칙이 변경되는 사항을 본칙에 개정일을 표기하는 것임을 답하다. [별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와같이 개정함을 부연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4)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가) 직제명 변경사항 반영
- 나) 신설한 직제의 사무분장 신설

- 주요 내용

- 가) 제14장(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및 제25조(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삭제하고 제17장(기타)로 신설

- 나. 제17장(기타)

- 제31조의2(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신설
 - 제31조의3(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단) 신설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5) 직인 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직제개정 반영

- 주요 내용

가) [별표1. 직인비치자] 개정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 인공지능융합대학장
- 동북아대학장(삭제)
- 참빛인재대학장(신설)
-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신설)
-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단장(신설)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민수 의원이 직인을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견을 개진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대로 해당 문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안건을 종결하다.

6)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김영무 팀장(이하 '교수지원팀장')이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하다.
- 제안이유
가)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있는 승진, 재임용 및 승급 심사기준 중 "연구"점수에 해당하는 인정항목을 「교원인사 규정」에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3차 교원인사위원회(2023.05.11.) 의결사항)
 - 주요 내용
 - 가) 제12조(승진임용), 제13조(재임용)
 - 나) [별표 1] 승진, 재임용 및 승급 심사기준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된 사항을 설명 요청하다.
 - 교수지원팀장이 평가 시에 문의가 많아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교원인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별표1]에 승진, 재임용에만 해당사항을 명시하는 것에서 이를 정년 보장 교수 승급" 표에도 함께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됨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디자인,건축설계 실적"으로 디자인 문구 뒤에 쉼표로 연결되어 있어 의미가 불분명함을 개진하다.
 - 교수지원팀장이 교수업적평가 규정 문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디자인 자구 뒤에 가운뎃점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다.
 - 부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고, 가운뎃 점과 쉼표는 의미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자구의 경미한 수정을 일괄 후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7)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가) 교수업적평가 항목 중 봉사분야 기준에서 교내봉사 영역의 교수회의 참석 실적 구분기준을 개강교수회의와 단과대학별 종강교수회의로 구분하여 참여 실적 인정

- 주요 내용

가) 제5조(평가항목) [별표 1] 개정

나)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 : 3. 봉사 분야

- 교수회의 참석실적 인정구분 세분화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개정 취지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기준이 모호하여 전자정보공과대학대학 교수업적평가 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8)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가) 산학협력중점교원을 구분하는 명칭을 명시하여 대상자별 적용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11조(책임강의시간) 개정

- 책임강의시간 감면대상자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명시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강성률 의원이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형과 지정형 교원의 현황을 질의하다.

▪ 교수지원팀장이 채용형 전임교원은 3명, 지정형 전임교원은 2명임을 답하다. 채용형 비전임교원은 20명 미만임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6. 기타안건

- 부의장이 본 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및 자문을 종결하고, 기타사항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개진하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 기능에서 자문사항은 "제3호 내지 제5호"이므로 제4호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광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획처장이 "제3호 내지 제5호"는 3호에서 5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을 답하다.
- 천성오 의원이 이해를 잘못하였음을 답하다.
- 부의장이 3호 내지 5호는 3호 또는 5호로 이해될 수 있어 분명한 단어로 수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법적으로 '내지'는 ~에서 ~까지라는 의미임을 답하다.
- 반중혁 의원이 법적으로 '내지'에는 전부 포함되는 의미이므로 가장 명확한 단어임을 부연하다.
- 김민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에서 자문안건은 관련부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외부 위원으로 학내 사정 및 개정의 취지를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고 부연하다. 입안서에서 개정 취지를 자세히 작성하여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정용식 의원이 자문안건 설명자료 설명을 녹화하여 사전에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개진하다.
- 유경선 의원이 규정입안서에 개정취지에 개정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는 제안의 이유가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서류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회의자료에 배경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부연하다.
- 부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을 대평에서 먼저 공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열람을 요청하다.
- 부의장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7. 폐회

- 부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안)」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자진철회되었음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와 자문을 마친 후 차기 회의개최일(7월25일 14시)을 안내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3년 5월 31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별첨

부 의장 권 인 철 (서명)

평의원 정 용 식 (서명)

평의원 이 강 훈 (서명)

평의원 유 경 선 (서명)

평의원 강 성 를 (서명)

평의원 천 성 오 (서명)

평의원 양 근 제 (서명) 별첨

평의원 김 태 현 (서명)

평의원 송 영 군 (서명)

평의원 김 민 수 (서명)

평의원 반 중 혁 (서명)